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07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박용갑 · 어기구 · 정준호

김병주 · 서영교 · 서영석

조인철 · 이재관 · 허영

노종면 · 윤준병 · 이용우

이해식 · 진성준 · 김영환

서삼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

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람
3. 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간병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③ ----- ----- ----- .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
<신설>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u><신 설></u> ④ (생 략) <u><신 설></u>	<u>세대 구성원이 본인 뿐인 사</u> <u>람</u> <u>3. 그 밖에 세대 구성원 등의</u> <u>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u>에 해당하는 사람</u> ④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대한</u> <u>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u> <u>구하고 차상위계층(「국민기초</u> <u>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u> <u>계층을 말한다) 및 그 밖에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u> <u>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1</u> <u>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u> <u>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전</u> <u>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u> <u>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u> <u>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u> <u>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	---